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451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1. 제안이유

모범납세자에게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임야)대장의 수수료에 대한 금액 등을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6조제4항)

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임야)대장의 수수료를 초과1장당 100원에서 20장 초과 1장당 수수료를 100원으로 함.(별표 제1호 카목(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0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3.12. ~ 2020. 4. 1.)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을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제1항 중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을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로, “청구자”를 “신청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로 한다.

별표 제명을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 중 “종목”을 각각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로, “수수료액”을 각각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호 카목(3) 중 “1통”을 “1필지”로 하며, 같은 목 (4) 중 “1면”을 “1필지”로, “초과 1장당”을 “20장 초과 1장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 중 “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8)부터 (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징수하는 <u>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 ----- ----- <u>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u> ----- ----- -----.</p>
<p><b>제2조(적용)</b>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b>제2조(적용)</b> ----- ----- ----- <u>따라</u> -----.</p>
<p><b>제3조(종류 및 요액)</b> 수수료를 징수할 <u>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u> 한다.</p>	<p><b>제3조(종류 및 요액)</b> ----- <u>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u>----- -----.</p>
<p><b>제6조(수수료의 감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b>제6조(수수료의 감면)</b> ① ----- ----- ----- ----- ----- <u>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u> ----- ----- -----.</p>
<p>1. ~ 9. (생략)</p>	<p>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 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p> <p>11. (생략) ② ~ ③ (생략)</p> <p>&lt;신설&gt;</p> <p>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p> <p>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7조(징수시기) ①-----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 - 신청자-----.</p> <p>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p> <p>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p>

현행	개정안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발급된 경우</u></p> <p>제8조(시행규칙) ----- <u>필요</u>  <u>한</u> -----.</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b></p> <p>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4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    (1) 지방세납세증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u>건</u></td> <td style="text-align: center;"><u>0</u></td> <td></td> </tr> <tr> <td>    (2) ~ (6)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 차.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    (1) ~ (2)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u>1통</u></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td> </tr> <tr> <td>    (4) 토지(임야)대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u>1면</u></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td> </tr> <tr> <td>    (5) ~ (9) (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u>초과</u> <u>1장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body> </table>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생 략)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납세증명	<u>건</u>	<u>0</u>		(2) ~ (6) (생 략)				다. ~ 차. (생 략)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2) (생 략)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1통</u>	800		(4) 토지(임야)대장	<u>1면</u>	400		(5) ~ (9) (생 략)	<u>초과</u> <u>1장당</u>	100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b></p> <p>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5%;">금액</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td> <td></td> <td></td> <td></td> </tr> <tr> <td>    &lt;삭 제&gt;</td> <td></td> <td></td> <td></td> </tr> <tr> <td>    (2) ~ (6)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 차.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td> <td></td> <td></td> <td></td> </tr> <tr> <td>    (1) ~ (2)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u>1필지</u></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td> </tr> <tr> <td>    (4) 토지(임야)대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u>1필지</u></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td> </tr> <tr> <td>    (5) ~ (9)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장 초과</u> <u>1장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r> </tbody> </table>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다. ~ 차. (생 략)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1필지</u>	800		(4) 토지(임야)대장	<u>1필지</u>	400		(5) ~ (9) (현행과 같음)	<u>20장 초과</u> <u>1장당</u>	100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생 략)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납세증명	<u>건</u>	<u>0</u>																																																																																							
(2) ~ (6) (생 략)																																																																																									
다. ~ 차. (생 략)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2) (생 략)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1통</u>	800																																																																																							
(4) 토지(임야)대장	<u>1면</u>	400																																																																																							
(5) ~ (9) (생 략)	<u>초과</u> <u>1장당</u>	100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다. ~ 차. (생 략)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u>1필지</u>	800																																																																																							
(4) 토지(임야)대장	<u>1필지</u>	400																																																																																							
(5) ~ (9) (현행과 같음)	<u>20장 초과</u> <u>1장당</u>	100																																																																																							

현행				개정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단위 : 원)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비고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보건소 인·허가 및 <u>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u>				라. 보건소 인·허가 및 <u>신고사항</u>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위생처리업 신고</u>				<삭제>			
- <u>신규</u>	1건	7,000		<삭제>			
- <u>변경</u>	1건	3,500		<삭제>			
(9) <u>세척제 제조업 신고</u>				<삭제>			
- <u>신규</u>	1건	20,000		<삭제>			
- <u>변경</u>	1건	10,000		<삭제>			
(10) <u>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u>				<삭제>			
- <u>신규</u>	1건	7,000		<삭제>			
- <u>변경</u>	1건	3,500		<삭제>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비고]

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cm, 세로 30cm)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수수료(제27조 관련)

####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